

학칙개정안 신·구대조표

현행	개정안
“신설”	제40조의 2(출결) ④ 교과목 담당 교원은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, 예비군 동원·훈련 참여로 인한 사유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출석을 인정하여야 한다.
“신설”	제40조의 3 (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금지) ① 소속 학과(부)장 및 교과목 담당 교원은 학생이 「예비군법」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,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지 하지 못한다. ②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보강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	부 칙 1. (시행일) 본 개정 학칙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